



서울고등법원

제 8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0127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영동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현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17가합583211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9,620,237원 및 그중 107,396,300원에 대해서는 2015. 9. 30.부



터, 53,342,300원에 대해서는 2016. 1. 25.부터, 7,086,976원에 대해서는 2016. 3. 31.부터, 26,250,000원에 대해서는 2016. 4. 27.부터, 2,625,000원에 대해서는 2016. 5. 3.부터, 33,000,000원에 대해서는 2016. 11. 4.부터, 27,000,000원에 대해서는 2016. 12. 19.부터, 18,656,000원에 대해서는 2017. 3.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그중 674,263,66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중 3,000,000원에 대해서는 2015. 9. 30.부터, 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6. 1. 25.부터, 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6. 3. 31.부터, 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6. 4. 27.부터, 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6. 5. 3.부터, 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6. 11. 4.부터, 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6. 12. 19.부터, 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3.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그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항소이유로 재차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5면 3~5행의 "[인정근거]" 중 "증인 I, J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I, J의 각 증언"으로 고치고, "갑 제47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서의 증인 I, P의 각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6면 밑에서 1행의 "감정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 7면 밑에서 3행의 "감정인의 감정 결과, 신문 결과", 8면 6행 및 12행, 10면 7~8행의 각 "감정인의 감정 및 신문 결과", 10면 밑에서 3행의 각 "감정인"을 각 "제1심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및 보완촉탁 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16행의 "을 제2호증의 1의 특약사항 제4항"을 "이 사건 기본계약의 특약사항 제8항 및 이 사건 제1차 계약의 특약사항 제4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밑에서 3행의 "전문심리위원의 답변 및"을 삭제하고, 8면 12행의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을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면 밑에서 2행, 9면 2행의 각 "감정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실제로 이 사건 감정을 수행한 Q"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12행의 "한편"부터 10면 1행의 "받아들일 수 없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제1심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및 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MES 프로그램에 설계서(논리/물리 모델, 프로그램 사양서)가 존재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스코드가 개발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로서는 ERP 시스템 구축자인 피고에게 MES 인프라 구성,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구조 등의 설계서와, MES 시스템을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가 어떤 과정으로 생성되고 저장되는지, 피고가 구축하는 ERP 시스템에 어떤 정보가 언제, 어느 DB로 가야 기존 MES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하였어야 할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산 담당자인 I을 통하여 기존 MES 연동을 위한 모든 협력을 피고에게 제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11면 15~17행의 괄호 안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오히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실제로 이 사건 감정을 수행한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의 용역비 수준은 실제 이행된 수준에 비하여 과소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2021. 11. 10.자 조서 15쪽)』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계약 및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MES 연동작업은 피고가 책임을 지고 완성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의 부담으로 MES 연동작업을 완성해주기로 하였기 때문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제공하거나 나아가 그에 필요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해줄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본계약의 특약사항 제8항 및 이 사건 제1차 계약의 특약사항 제4항에 "MES DATA 연동작업은 피고가 책임을 지고 완성하여 R 사업의 감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단, MES 내부에 문제시는 별도 협의 조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기본계약 및 이 사건 제1차 계약의 위 각 특약사항의 의미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은 제공받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의 부담으로 MES 연동작업을 완성하고 나아가 그에 필요한 테스트 환경도 구축한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입찰 및 선정 과정

가) 원고는 ERP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자 함에 있어 먼저 20개 정도의 관련 업체에 연락하여 원고의 ERP 업무 범위를 설명하고 견적을 받아보았는데, 당시 원고가 업체들에게 제시한 설명서에는 '기존 MES 데이터와의 연계에 100% 문제가 없어야 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그중 입찰참여의사를 밝힌 S, T, U(선행 시스템 구축 업체), 피고, V, W의 6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5. 9.경 입찰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6개 업체로부터 프레젠테이션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개 정도의 관련 업체에 원고의 ERP 업무 범위를 설명할 때부터 또는 적어도 위 입찰 과정에서 '선행 시스템 구축 업체인 U로부터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입수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



고, 따라서 피고도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위 설명서의 '기존 MES 데이터와의 연계에 100% 문제가 없어야 함'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한편 입찰 참여 업체 중 S 및 피고의 입찰 제안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3개 업체의 입찰 제안서는 현출되지 않고 있다. 선행 시스템 구축업체로부터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입수할 수 없고, 나아가 테스트 환경 구축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은, 입찰 참여 업체로서는 투입 인원, 작업 기간 및 난이도, 소요 비용 등이 적잖게 추가될 수 있는 문제인 동시에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입찰에 있어서 타 경쟁업체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장점이라고 할 것임에도, 입찰 제안서에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은 발주자인 원고로서도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다고 할 것인데, 제안요청서 또는 적어도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집중하여 질문을 하고 그 답변 내용을 기재해두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관한 문답서 등도 남아 있지 않은바, 이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한편 위 입찰과정에서 피고는 미국 D사의 ERP를, 나머지 5개 업체는 국산 ERP를 제안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각 부서(관리부, 영업부, 생산부, 고객지원, 품질경영, 연구소, 구매부)가 참가한 업무 적합도 평가에서는 V, W이 더 높은 합계 점수를 받았으나, 원고의 경영진은 최종적으로는 피고를 ERP 시스템 구축업체로 선정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경영진이 실무진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다면, 기존



MES 프로그램의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의 미제공 문제를 피고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당연히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관한 원고의 내부 보고서 등이 남아 있지 않은바, 이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특약사항의 문구

이 사건 기본계약 및 이 사건 제1차 계약의 각 특약사항에는 '피고는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은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을 양해하고, 피고의 부담으로 MES 연동작업을 완성한다'든가 '피고의 부담으로 MES 연동작업에 필요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한다'는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단, MES 내부에 문제시는 별도 협의 조치한다)"라는 문구의 의미는, 선행 시스템 구축 업체로부터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협의한다는 취지로 볼 여지도 있다.

3)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의 보고 내용

가) 피고는 이 사건 통합 ERP 시스템의 구축 과정에서 그 추진 일정 및 진행 현황 등을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6. 1.경 보고한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에 '선행 시스템 구축 업체로부터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는 등의 현황 분석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2016. 2. 18. 제1차 중간보고, 2016. 4. 21. 제2차 중간보고의 각 'Tasks'란에도 MES 연동작업 항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16. 5. 19. 제3차 중간보고 중 추진 일정 현황 하단에 '※ MES 인터페이스 개발로 인한 지연 발생되었으며 추가 개발자(1인) 투입으로 프로그램 개발



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2016. 7. 21. 제4차 중간보고에는 별다른 기재 사항이 없고, 2016. 8. 31. 제5차 중간보고의 'Tasks'란에 '프로그램 개발'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2016. 10. 5. 제6차 중간보고 및 2016. 12. 14. 제7차 중간보고에 이르러서야 각 'Tasks'란에 'MES 개발/테스트' 항목이 명시적으로 추가되었다.

나) 위 특약사항의 의미가 원고가 피고에게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제공할 수 없어 피고가 이를 독자 개발하여야 하고, MES 연동작업에 필요한 테스트 환경도 피고의 부담으로 구축하여야 한다는 취지였다면,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각 보고를 함에 있어 그 초기 단계부터 이에 관한 현황 분석 및 일정 수립, 구체적 작업 내용 등을 명시하였어야 할 것이고, 원고로서도 피고에게 보고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추가 보고를 하도록 요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MES 연동작업 문제가 보고서에 언급되기 시작하였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민

 판사 김봉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5

판사 강성훈